제8회 WTA Daejeon Hi-Tech Fair 참가신청서



제8회 WTA Daejeon Hi-tech Fair 2011 사무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07(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 전 화: (042)821-0165 / FAX: (042)821-0149 / E-Mail: kdc7388@daejeoncvb.or.kr

1. 신청자

구 분	국 문	영 문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전시품목		
사업자등록번호	업 태	종 목
담 당 자	소 속	직 위
전 화	팩 스	
E-mail	홈페이지	

2. 신청내역 및 금액

[부가세별도]

		=	구 분			신	청 수	량	1	단	가	금	액
부	스 신	청	독립-	부스			()개 부스	참가	비 지원	_	원
			조립-	부스			()개 부스	참가	비 지원	_	원
전	기 신	청	주 (설치 및	간 사용료)	단상	220v	()kw	30,00	00원 / kw		원
					삼상	220v	()kw	30,00	00원 / kw		원
					삼상	380v	()kw	30,00	00원 / kw		원
			24٨	. 간	단상	220v	()kw	35,00	00원 / kw		원
			(설치 및	사용료)	삼상	380v	()kw	35,00	00원 / kw		원
인	터	넷	설치 및	사용료			()회선	70,00)0원 /회선		원
전		화	국	내			()대	70,00	00원 / 대		원
			국	제			()대	100,00	00원 / 대		원
급	배	수	설치 및	사용료			()개소	200,00)0원 /개소		원
압	축 공	기	설치 및	사용료			()대	200,00	00원 / 대		원
		광고	亜 ス →	표지뒷면 표지5면	표지	4면	()	600,00	00원 / 1면		원
디럭	벡토리 공		표지 표		표지	3면 및	대면()	500,00	00원 / 1면		원
				표지4면	표지	2면 및	대면()	400,00	00원 / 1면		원
				┵╙지	내지		()	300,00	00원 / 1면		원
금		액											원
V	Α	Τ											
합		계											

참가규정을 수락하고 참가신청금(참가비 및 기술지원신청료 50%)	_원과 함께 아래 첨부
서류를 동봉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 본계약서에 날인한 사람은 전시자(참가업체)를 대표하여 본 계약서를 이행할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었음을 보장합니다.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신청서 입급증 사본(이상 팩스송부 가능), 전시품 카다로그 1부 ※ 신청금 온라인 납부절차: 하나은행 679-910018-46304 [예금주: (재)대전컨벤션뷰로]

제8회 WTA Daejeon Hi-Tech Fair 참가규정



제 1조 (용어의 정의)

- ①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 ② "전시회"라 함은 제8차 WTA 대전 High-tech Fair를 말한다.
- ③ "주최자"라 함은 대전광역시 및 WTA를, "주관자"라 함은 대전 컨벤션뷰로(DCC)를 말한다.

제 2조 (참가신청)

- ①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참가비 및 기술지원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신청금을 납입함으로써 본 규정이 성립한 것으로본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예정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참가신청 접수 후에도 주관자는 전시회 사정에따라 15일 이내에 기술지원비 등 기 납부금을 반려할 수 있다.
- ③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제반 제출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제 3조 (신청및 기술지원비 납부절차)

- ① 주관자는 참가신청 순에 따라 국적, 전시품의 성격, 참가신청 면적, 참가자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전시자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여 전시자별 전시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주관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이면 전시자가 선택한 전시부스 위치 및 면적을 전시자와 협의 후 변경 하여 배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4조 (전시실 관리)

- ①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②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사전 허가 없이 직매 행위를 하는 경우,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전시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
- ⑤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 칠, 접착제 등으로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관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⑥ 주관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 5조 (참가비 납입조건)

- ①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시 참가비 및 기술지원비 금액의 50%를 신청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신청 마감기한인 2011년 10월 15일 내 잔금 50%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기간 이후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100% 완납하여야 한다.
- ② 전시자가 참가비 및 기술지원비 등 전시회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미납할 경우, 주관자는 완납까지 참가를 유보하거나 선택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

제 6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관자가 규정한 기간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 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관자 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 7조 (주최측에 대한 정보제공)

전시자는 주관자의 부스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장치물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박람회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관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 8조 (보험, 보안 및 안전)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주관자는 전시자 및 관람 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계조치를 강구할 것이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스탠드 및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하며, 주관자는 필요시 시공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도 있다.

제 9조 (전시실 관리)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 하여야 한다. 전시자의 활동은 할당된 스페이스를 벗어날 수 없으며, 주관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 할 수 있다

제 10조 (현장판매 금지)

전시회의 참가 목적은 관련기자재 및 서비스를 실연하고 관람객에 게 보여주는데 있으므로, 전시자는 현장에서 판매활동을 전개할 수가 없다. 단, 주관자가 별도로 정한 전시장내 특별 코너에서의 판매활동은 예외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세금 및 기타 모든 사항은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1조 (전시자의 참가취소 또는 변경)

- ①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사용을 취소할 경우, 전시자는 즉시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 ② 본조 1항의 통보가 2011년 10월 15일까지 수령된 경우 주관자는 전시자로부터 받은 금액중 해당금액의 50%만을 환불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동 취소통보가 2011년 10월 15일 이후에 주관자에게 수령된 경우에는 일체 환불하지 아니한다.
- ③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2조 (전시회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단, 불가항력등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박람회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제 13조 (보충규정)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대전컨벤션 분로의 제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4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른다.